

우리 나라의 關稅政策과 產業保護

車 輸 權

<目次>	
I. 머릿말	3. 1967年 關稅率調整의 背景과 內容
II. 關稅의 歷史調達機能과 그 變遷	4. 1973年 關稅率調整의 必要性 과 그 내용
III. 關稅率調整의 經緯와 內容	IV. 關稅의 國內產業保護效果分析 調整原則 및 그 内容
1. 關稅率構造의 推移	V. 政策課題
2. 1963年 關稅率調整의 目的과 調整原則 및 그 内容	

I. 머릿말

오늘날 各國의 關稅制度는 각종 政策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多樣한 機能을 수행하고 있다. 원래 關稅도 그 起源은 國家活動에 소요되는 財源을 조달하는데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高率의 關稅가 輸入을 억제하는 效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찌기 關稅의 國內產業保護機能에 대해서도 많은 關心이 표명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關稅가 國民經濟에 미치는 作用 대지 機能은 (1) 財源의 調達 (2) 國內產業保護 또는 生產의 增加 (3) 消費의 抑制 (4) 所得의 再分配 (5) 輸入抑制 대지 國際收支의 改善 (6) 交易條件의 改善 등으로 要約되고 있으나 國民經濟의 成長發展에 따라 財源調達機能은 점차 그 重要度가 低下되는 反面에 關稅의 그밖의 經濟的 機能이 重視되는 일반적인 傾向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經濟發展을 指向하는 開發途上國에 있어서는 工業化政策의 一環으로서 國內產業의 育成이 매우 중요한 政策課題로서 提起되지만 國內產業이 國內市場에 있어서도 競爭力を 갖지 못하는 初期段階에 있어서는 「幼稚產業」育成을 위한 政策方向이 輸入代替이든 輸出指向이든 간에 國內產業保護를 위한 措置가 불가피하다.⁽¹⁾ 뿐만 아니라 國內產業이 國內市場

筆者：서울大學 社會科學大學 貿易學科 教授

※ 이 研究는 1975年度 文教部 學術研究助成費의 支援을 받아 完成되었음.

(1) 技術進步나 勤勞者의 訓練 등을 통한 利益이 特定企業에 內部化되는데 그치지 않고 外部經濟效果가 생기는 產業만을 對象으로 하며 特別하게 新規產業에 대한 保護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期間이 경과한 후 自立할 수 없거나 生產物의 價格引下 등에 의하여 經濟厚生을 증가시킬 수 없는 產業은 保護의 對象이 될 수 없다.

에서 競爭力を 갖는段階에 도달하더라도 輸出市場에서 競爭력을 갖지 못하는段階에 있어서는 國內產業育成을 위한政策的努力이 주로 輸出競爭力의獲得에 경주되어야 할것이지만 이때에도 國內市場規模에 따라 國際價格이規定되는 產業에 있어서는 輸出市場을 확보하기 위한保護措置가 불가피하게 된다.⁽²⁾

國內產業保護를 위해서는 關稅 내지 輸入制限措置나 關稅와 동등한 保護效果를 갖는補助金과 같은政策手段이 이용되지만 오늘날 保護政策의主役은 關稅가擔當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이는 生產補助도 關稅와 동등한 保護 내지 生產效果를 갖고 있는 하나財政上制約을 받게 될뿐만 아니라 生產補助의 支給보다 關稅賦課가 보다 손쉬운措置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輸入數量規制나 輸入許可制와 같은 輸入制限措置는 國內生產을 保護하기 위한 가장徹底한手段이기는 하지만 競爭排除로 인한 非能率의企業의 溫存等 國內產業을 保護하는目的인 國際競爭力의獲得에否定的인 寄與를 하게 될뿐만 아니라對外적으로는 폭넓은 報復措置를 유발하여 國際經濟의不安을 조성하는要因이 될可能性이 크다.

高率의 保護關稅도 輸入制限措置와 같이 競爭을排除시킴으로써 國內生產者를 保護하는手段이기는 하지만 輸入制限措置와 같은直接的인規制手段은 아니고 生產者에 대한補助金의支給과 같이 保護를 받는 產業이 生產하는 生產物의 國內價格을相對적으로有利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利潤을 높여 國內生產을 증가시키는間接的인手段이다.⁽³⁾ 그러므로 國內產業保護의目的이一定한期間이經過한 후 保護를 받는 產業으로 하여금 國際競爭力を獲得케 하는데 있다면 經濟運用에恣意性을 부여하고 效率을阻害하는데 그치지 않고 競爭精神을歪曲케 할可能性이 큰直接的인政策手段보다 國內市場確保를 위한 保護費用을 신축성있게調節할수도 있고 또 工業化의進展에 따라 輸入代替로부터 輸出指向政策으로轉換하는過程에서도 競爭刺戟의手段으로活用할수 있는間接의인政策手段인 關稅가主役을擔當하게 될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할수 있다.⁽⁴⁾

우리나라의 關稅制度도 國民經濟의與件이나 工業化를 위한政策體系 및 產業構造의變

(2) 輸出供給價格이 生產規模과 國內市場規模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規模의 經濟가 작용하고 賣出額에서 占하는 輸出의比重이 작으면 輸出供給價格을 限界價格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國際價格이 國內價格보다 낮아지는 傾向이 있어 그렇다.

(3) 關稅는 補助效果와 함께 課稅效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經濟的機能을遂行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輸入制限措置는 國內生產者로 하여금 消費財의價格을引上시키거나 質이 낮은代替原料를 사용케 할 possibility이 있다.

(4) Balassa의 지적과 같이 「資本投資를 포함한 經濟資源이 效率의으로配分되기 위해서는 輸出 및 輸入代替가附加價值에 관하여同一한誘因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같이 하여 輸出을 통한外貨獲得과 輸入代替를 통한外貨節約에 소요되는 國內資源의費用을均衡화시킬 수 있다」

Bela Balassa, "The Korean Tariff Reform of 1971: An Evaluation," Sept. 1, 1971.

動에 따라 1949年に 關稅法이 制定된 이후 整備合理化作業이 계속되어 왔으나 關稅政策의 主要課題는 國內產業保護를 목적으로 하는 關稅措置의 合理化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政策課題는 60年代에 이르러 經濟開發計劃을 수립, 실시하게 되자 輸入代替產業의 育成이나 輸出振興政策의 實效를 얻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意義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 貿易自由化를 추구하는 國際經濟環境의 變化에 대처하여 開放體制로의 移行과 때를 같이하여 關稅의 保護的 統制的 機能을 대폭 강화하였던 1967年末 關稅率調整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어 1973年 2月에는 다시금 關稅率의 대폭적인 調整이 이루어졌으나 그 中心課題도 역시 國內產業의 급속한 成長과 貿易規模의 擴大를 質量으로 하여合理的인 產業構造의 誘導를 위한 關稅保護의 適正化를 기하는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論文은 먼저 1963年 2月과 1967年 11月 그리고 1973年 2月의 關稅率調整을 통하여 俱現된 關稅政策의 方向과 特徵 그리고 그 意義를 비교, 검토한 다음 그 政策效果를 주로 關稅의 國內產業保護機能이라는 側面에서 살펴 보려는 데 그 目的을 두고 있다.

II. 關稅의 歲入調達機能과 그 變遷

우리나라에서 關稅의 歲入調達機能이⁽⁵⁾ 弱化되고 그 반면에 關稅의 產業育成 保護 등 經濟的 機能이 강화되기 시작한 것은 1960年代 後半期부터이다. 60年代 前半期에 있어서도 關稅收入은 國稅收入의 22.5% (1961~65年 期間平均)를 점하였고, 關稅減免額을 下廻하였으나 60年代 後半期에 이르러 國稅收入에서 점하는 關稅收入의 比重은 20%를 下廻하기 시작하고 關稅減免額이 關稅徵收額을 上廻하는 事態가 생겨 났다. 이 같은 事態는 70年代 前半期 중에도 계속되어 國稅收入에서 점하는 關稅收入의 比重은 1971年에 12.8%로 떨어졌고, 關稅減免額은 1973年에 關稅徵收額의 3.9倍에 달하였다. 이러한 關稅收入 및 關稅減免額의 動向은 60年代 後半부터 關稅의 機能이 歲入調達보다 產業育成 및 保護에 重點을 두게 되었던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나 그러한 關稅機能의 급격한 轉換에는 過度한 保護에 따른 歲入缺陷의 增大나 資源分配의 歪曲化가 뒤따르기 마련이므로 1973年부터 關稅의 歲入調達機能을 개선하는 措置가 취하여 졌고, 이어 1974年부터는 關稅減免幅을 縮少하는 措置가 강구되었다.

그러나 1975年에 있어서도 關稅徵收額은 國稅收入의 14.8%를 점하였을 따름이고 關稅減

(5) 先進工業國에 있어서는 關稅의 歲入調達機能이란 이미 적극적인 意義를喪失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開發途上國에 있어서는 關稅를 純經濟的인 側面에 局限시켜 생각할 수 없다. 즉 關稅의 歲入調達機能은 國內生產保護 내지 擴大機能과 함께 적극적인 意義를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表 1>

關稅의 歲入調達機能

(單位 : 억원)

	國 稅 收 入 (A)	關 稅 徵 收 額 (B)	關 稅 減 免 額 (C)	比 率 (%)		
				(B)/(A)	(C)/(A)	(C)/(B)
1966	876	176	203	20.09	23.17	115.34
1967	1,292	254	324	19.66	25.08	127.56
1968	1,943	379	664	19.51	34.17	175.20
1969	2,628	447	863	17.01	32.84	193.06
1970	3,347	509	1,074	15.21	32.09	211.00
1971	4,077	522	1,430	12.80	35.07	273.95
1972	4,334	591	2,146	13.64	49.52	363.11
1973	5,215	823	3,196	15.78	61.28	388.34
1974	8,239	1,267	3,028	15.38	36.75	238.99
1975	12,252	1,810	2,227	14.77	18.18	123.04

資料：財務部

免額은 關稅徵收額의 1.2倍에 달하였다.⁽⁶⁾ 이는 다시 말할 것도 없이 關稅政策이 계속 歲入調達機能보다 產業育成 및 保護機能에 重點을 두었던 것을 보여 주고 있다. 關稅의 歲入調達機能과 關稅의 產業育成 및 保護機能은 서로 非兩立的 關係(trade-off)를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으나 60年代 後半期부터 그 規模가 크게 擴大된 關稅減免은 主로 輸出支援을 목적으로 하는 輸出用原資材에 대한 關稅減免와 重要產業의 支援을 위한 產業用基礎設備品,

<表 2>

關稅減免의 内容

(單位 : 百分比)

	合 計	農 出 用 原 資 材	重 要 產 業	外 資 導 入	國 民 經 濟 緊 要 物 品	기 타	¹⁾ (輸出支援)
1966	100.0	22.4	23.6	0.2	24.9	18.9	(26.3)
1967	100.0	22.3	26.1	0.8	28.1	22.7	(25.4)
1968	100.0	24.8	38.7	1.0	23.1	12.9	(29.0)
1969	100.0	26.7	38.2	2.0	10.7	23.0	(26.2)
1970	100.0	33.2	31.5	1.3	18.9	15.1	(37.7)
1971	100.0	38.0	26.1	1.7	19.5	14.7	(41.6)
1972	100.0	44.3	24.7	2.2	18.9	9.9	(50.3)
1973	100.0	55.9	22.6	2.8	12.4	6.3	(65.9)
1974	100.0	82.2	10.3	2.2	0.5	4.8	(63.2)
1975	100.0	77.0	11.4	1.4	0.3	9.8	N.A.

1) C. Frank, K.S. Kim and L. Westphal, "Foreign Trade Regimes and Economic Development: South Korea," N.B.E.R., 1975.

資料：財務部

機械 등에 대한 減免, 外資導入에 따른 關稅減免, 國民經濟上 重要하다고 인정되는 物品에 대한 關稅減免 등을 内容으로 하고 있으며 그 중 輸出用原資材와 重要產業用基礎設備品 및

(6) 1975年에 關稅減免額이 크게 줄어 들었던 것은 同年 7月부터 輸入原資材에 대한 關稅還給制를 실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機械 등에 대한 關稅減免이 太半을 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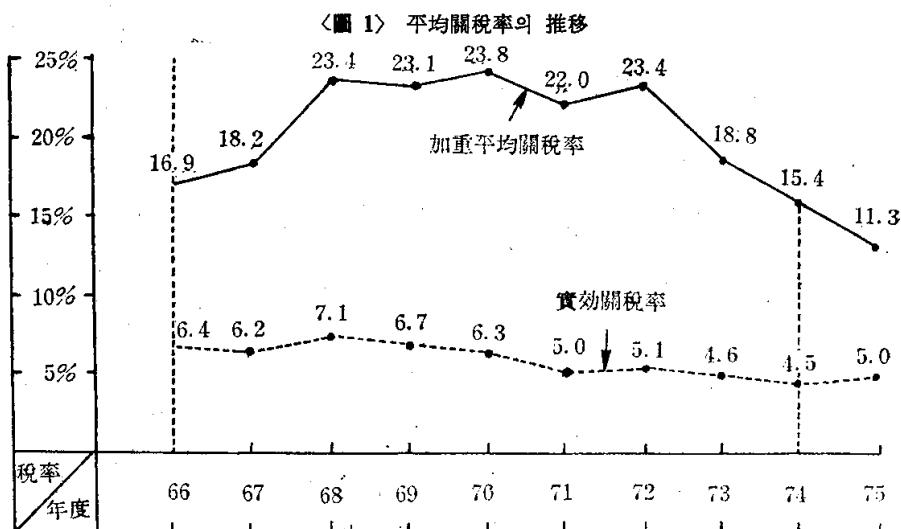
한 研究結果에 의하면 關稅減免 중 輸出支援을 目적으로 하는 關稅減免은 1962年에는 8.7%에 不過하였고 60年代를 통하여 그 比重이 30%를 上廻하지 않았다. 그러나 70年代에 이르러서는 1970年에 그 比重이 37.7%로 급격히 上昇한 이래 1973年에는 65.9%, 1974年에는 63.2%에 각각 달하였던 것으로 指摘되고 있다.⁽⁷⁾ 이 같이 關稅減免의 規模가 커지고 그 對象이 주로 輸出支援과 重要產業의 育成에 置重되었던 것은 60年代 後半期부터 關稅政策이 歲入調達機能보다 國內產業育成을 重視하되 國內市場의 확보에 의한 幼稚產業의 保護보다 稅制上의 優待措置에 의하여 國內產業, 특히 輸出產業의 育成을 도모하는 外部指向의 工業化를 支援하는데 力點을 두게 되었던데 그 原因을 찾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關稅減免額이 關稅徵收額을 上廻하기 시작한 1966年부터의 平均關稅率의 推移를 보면 加重平均關稅率(稅率別 輸入額에 의한 加重)은 1966年의 16.9%에서 1968~72年期間 중에는 23%臺로 높아 졌다가 1973年에는 18.8%, 1974年에는 15.4%로 低下되고 있다. 또한 實效關稅率(關稅徵收額 나누기 輸入額)도 1966年의 6.4%에서 1968年에는 7.1%로 높아 졌다가 그 후에는 계속 低下되어 1974年에는 4.5%라는 매우 낮은 水準에 머무르고 있다. 1968年에 加重平均關稅率이나 實效關稅率이 높아졌던 것은 67年 11月에 全面改正된 關稅法이 종전에 비하여 保護對象品目 중 低率關稅保護品目에 대한 適用稅率를 上向調整하고 無稅品目을 縮小하여 財政關稅品目으로 轉換시키는 등 關稅保護의 實效를 높이는 동시에 關稅免除의 幅을 줄여 財政收入을 확보하는 方向으로 關稅率의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1973年부터 加重平均關稅率이 크게 떨어지게 된 것은 1973年 2月의 關稅法改正에 의하여 既存產業에 대한 過當保護를 止揚하여 適正한 產業保護率를 책정하는 한편 財政關稅品目 중 主要產業用機械 및 基礎原資材나 農水產用緊要品에 대해서는 中間製品이나 完製品을 除外한 天然產品 또는 產業機資材에 대한 適用稅率을 종전의 5%~15%에서 5%~10%로 引下하는 方向으로 關稅率이 조정되었던데 그 原因이 있었다.

그리나 67年 11月에 단행된 關稅率調整에 따라 加重平均關稅率이 16%~18%水準에서 23%로 引上되었음에도 不拘하고 實效關稅率은 0.9%「포인트」가 높아졌으며 73年 2月의 關稅率조정에 의하여 加重平均關稅率이 23%水準에서 18.8% (1973年) 내지 15.4% (1974年)로 크게 떨어졌으나 實效關稅率은 역시 0.5%~0.6%「포인트」의 下落을 나타내고 있는데 不過하다. 이 같은 現象은 67年 11月과 73年 2月에 각각 단행된 全面的인 關稅率調整에도 불

(7) Suk Tai Suh, Import Substitu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Working Paper 7519, Dec. 1975, KDI, p. 211.



資料：財務部

구하고 關稅減免의 대폭적인 縮小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III. 關稅率調整의 經緯와 內容

1. 關稅率構造의 推移

우리나라의 關稅率表는 1961年에 BTN (Brussels Tariff Nomenclature) 分類方式으로 改編한 후 1963年에 第1次 關稅率調整이 행하여졌고, 이어 1967年 11月과 1973年 2月에 全面的인 關稅率調整이 단행되었다.⁽⁸⁾ 이에 따라 稅目數도 1963年度 改編時의 2,063개 稅目에서 1967年度 關稅法改正에 있어서는 3,168개 稅目으로 늘어 나고, 1973年度 關稅率調整에 있어서는 3,985개 稅目으로 늘어 났다. 또한 名目上의 平均稅率 (稅率別 稅目數의 算術平均) 도 63年度 改正時의 38.7%에서 1967年度 關稅法改正에 있어서는 38.8%로 거의 變化하지 않았으나 1973年度 關稅率再調整에 있어서는 31.3%로 크게 떨어졌다.

한편 63年度 關稅率調整에 의한 關稅率構造와 그 후의 關稅率再調整에 따른 關稅率構造를 서로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構造的 變化를 찾아 볼 수 있다. 첫째는 無稅品目이 그 絶對數에 있어서나 그 相對的 比重面에서 계속 늘어 나고 있다는 것이다. 1967年 11月의 關稅率再調整에는 無稅品目的 比重이 종전보다 다소 떨어졌으나 그 絶對數는 종전의 101

(8) 우리나라의 初期 關稅制度와 1960年代 初에 이르기까지의 制度變遷에 대하여는 다음을 參照, 車耕權, 「日帝下에 있어서 韓國의 貿易政策」, 「日帝의 經濟侵略史」,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刊, 1971年). 韓國關稅協會刊, 「韓國關稅史」, 1969.

<表 3>

關稅率構造의 推移

(單位 : 百分比)

稅率區分	1957	1962	1964	1968	1973	1975
無 稅	4.0	4.4	4.9	4.7	5.5	5.5
5~10%	17.7	10.0	10.2	8.8	12.7	12.9
15~20	25.7	20.3	20.2	36.5	37.7	38.2
25~30	11.5	16.3	16.6	3.9	9.9	9.3
35~40	18.3	14.5	13.3	10.1	8.0	8.3
50	10.0	7.3	7.9	10.7	9.5	9.6
60	7.7	6.2	7.1	5.8	6.4	6.2
70~80	3.4	12.3	11.5	7.7	6.6	6.6
90~100	1.7	7.0	6.5	8.9	2.5	2.5
120~	—	0.8	0.8	1.8	0.3	0.3
從 量 稅	—	0.7	1.0	0.7	0.6	0.6
擇 一 稅	—	0.1	—	0.2	0.2	0.2
稅 目 數	1,227	2,023	2,063	3,168	3,985	3,996
平 均 稅 率	30.3	39.4	38.8	31.3	31.3	31.3

資料：財務部 關稅局

개 品目에서 149개 品目으로 늘어 났다. 둘째로 稅率別 關稅品目的 分布를 보면 5%~20%의 稅率이 적용되는 品目數가 현저하게 늘어 나고 있다. 즉 63年度 關稅率調整에서는 그比重이 30.4%(1964年)로 종전보다 微騰한데 不過하였으나 67年 11月의 關稅率再調整에서는 그比重이 45.3%로, 그리고 73年 2月의 關稅率再調整에서는 50.4%로 높아졌다.⁽⁹⁾ 셋째로 25%~40%의 關稅率이 적용되는 品目의 比重도 63年度 關稅率調整에 있어서는 29.9%를 차하였으나 68年에는 14%, 그리고 73年에는 17.9%로 각각 떨어지고 있다. 넷째로 40%以上의 關稅率이 적용되는 品目 중에서 50%의 稅率이 적용되는 品目의 比重만이 높아지는 傾向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밖의 稅率이 적용되는 品目의 比重은 모두 떨어지고 있다. 끝으로 輸入抑制品目에 대한 最高稅率은 1963年度 關稅率調整에 있어서는 180% 내지 250%로⁽¹⁰⁾ 정하여졌고, 1967年度 關稅率再調整에 있어서도 100% 내지 250%로 책정되었으나, 1973年度 關稅率再調整에 있어서는 100% 내지 150%로 引下되었다.

2. 1963年 關稅率調整의 目的, 調整原則, 內容

우리나라가 關稅法을 새로이 制定(1949年)하여 自主的 關稅政策을 실시하게 된 當時부터 關稅政策의 주된 目標는⁽¹¹⁾ 國內產業의 保護育成과 財政收入의 確保에 두어졌으나 6·25動

(9) 이는 中心稅率이 大體로 20%線에 정하여졌던 것을 나타내고 있다.

(10) 高率의 禁止關稅(250%)가 導入된 것은 1961年에 內外國物品에 대한 差別的 物品稅를 부과하게 된 것과 때를 같이하고 있다.

(11) 우리나라 政府에 의하여 制定된 最初의 關稅法(1949年11月23日, 法律 第67號로 公布)의 制定要綱 중 「稅率策定에 대한 考慮」參照, 韓國關稅協會刊, 「韓國關稅史」, 1969, pp.218-19.

亂의 勃發로 戰時財政을 운영하기 위한 臨時關稅의 增徵이 불가피하게 되어 關稅政策은 貿易政策이나 產業政策의 一環으로서 보다 財源調達를 위한 歳入政策으로서의 性格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特徵은 休戰後에도 戰後復舊와 國防에 소요되는 財源調達를 위하여 계속 유지되었으나 60年代에 이르러서는 經濟開發計劃을 수립, 實시함과 아울러 國內產業을 保護하기 위한 關稅의 機能을 整備强化 내지 合理化하는 作業이 활발하게 進行되었다.

우리 나라의 關稅率表가 BTN 分類方式으로 改編된 것은 1961年이었으나 이 같은 새로운 品目分類方式이 채택된 후 1963年 12月에는 처음으로 全面的인 關稅率調整이 實시되었다. 이 1963年 關稅率調整의 目的是 (1) 國內主要產業 및 輸入代替產業의 保護・育成 (2) 輸出의 급속한 伸張과 完製品 輸入抑制에 의한 國際收支의 改善 (3) 經濟開發事業의 遂行에 필요한 財源의 捏出에 두었으며, 關稅率調整의 주요 骨子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國內需要를 충족하는 物品으로서 外國產業과 競合되는 것은 高率로 책정한다. 둘째 國內生產이 불가능하거나 供給이 不足한 것으로서 장래에도 전혀 可望이 없는 것은 低率로 책정한다. 셋째 用途上 緊要品, 즉 國民의 基本生活에 필요 불가결한 物品과 同製品은 無稅 또는 低率로 한다. 그러나 日用品, 其他品(奢侈品) 등은 점차 高率로 정한다. 넷째 重要產業機械, 1次產品, 工業用原資財 등은 無稅 또는 低率로 하고 半製品, 完製品 順序로 정한다. 끝으로 장래 發展이 유망시되는 產業, 輸出專用產業과 輸入代替產業 및 幼稚產業의 製品과 競合되는 輸入品에 대하여는 高率로 정하고, 同工業用 原資材에 대해서는 低率로 책정한다.⁽¹²⁾

이러한 關稅率調整原則에 따라 〈附表 1〉과 같은 關稅率策定基準表에 의거하여 2,063개 品目의 關稅率이 조정되었으며 關稅品目의 緊要度와 加工度 및 經濟的 用途別로 정하여진 關稅率構造는 대략 다음과 같은 特徵을 갖고 있었다. 첫째로 輸入品의 加工度가 높아짐에 따라 稅率도 上昇하는 이른바 “tariff escalation”方式이一般的인 原則으로 채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輸入品의 緊要度(緊要品, 有用品, 其他品)와 國內生產과의 競合與否(國내生產不能品, 國內部分生產品, 國內生產充足品)에 따라 漸次 高率를 적용하는 複合的인 “tariff escalation”方式을⁽¹³⁾ 채택하였다. 둘째로 緊要度에 따른 關稅品目의 分類概要是 別記한 것과 같다. 끝으로 稅率別 稅目數의 構成比를 보면 1963年 12月에 조정된 關稅率構造는 1961年에 關稅率表를 BTN分類方式으로 全面 改編하였던 關稅率構造와 大差가 없었으며 平均稅率(稅目別 稅率의 單純平均)도 1962年的 39.4%에서 38.7%로 근소한 變化를 나타냈을 때를 이었다(表 3 參照). 또한 稅率別 稅目의 分布를 보면 稅率區分 15%에 비교적 많은 品目이

(12) 財務部, 稅制改革白書, 1967年 pp. 211-12.

(13) Tariff Escalation은 要건에 原材料에는 가급적 低率關稅를 부과하여 이를 輸入하고, 加工度가 높은 製品에는 高率關稅를 부과함으로써 加工工業(製造業)을 保護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緊要度에 따른 品目分類概要

緊要品：	<u>國際慣例上 또는 國策上 特殊取扱品</u>
適用 稅率 0%	公益用品(鐵道·車輛·航空機 등), 原子力用品, 兵器類, 文化財·外國書籍·新聞, 紙幣·銀行券, 各種原礦斗 原油, 血精·血漿과 백신類, 기타 重要產業의 施設機材
<u>全國民의 基本生活에 必須不可缺한 物品과 同製造原料</u>	
適用 稅率 下限 5% 上限 90%	織物의 原料, 原棉, 原毛, 穀類, 住宅建築資材, 各種化工藥品, 紙類, 肥料 및 基幹產業機材 醫藥·農藥·肥料 등의 製造原料
<u>國民의 日常生活에 필요한 物品으로서 緊要度가 비교적 낮은 物品</u>	
適用 稅率 下限 10% 上限 120%	織物의 原料·合成纖維, 養營劑, 각종 裝飾用資材, 각종機器, 時計·帽子 등
<u>奢侈性物品과 政策上 輸入抑制를 要하는 物品</u>	
適用 稅率 下限 25% 上限 250%	鹿茸, 獵銃, 酒類, 煙草, 化粧品, 乘用自動車

資料：財務部，稅制改革白書，1967. pp. 212-13.

集中되어 있으나 稅率區分 10%에서 80%사이에 分布되어 있는 稅率別 品目數는 비교적 고른 分布를 보이고 있다(稅率區分 70% 除外). 이같이 稅率別 稅目이 비교적 고르게 分布되어 있는 것은 63年 12月에 실시된 關稅率調整이 關稅品目을 加工度 및 經濟的 用途別로 14개 段階로 区分하는 한편 緊要度에 따라 역시 14개 段階로 細分하여 加工度와 緊要度의 相乘積을 기준으로 삼아 複合的인 "Tariff Escalation" 方式을 채택하였던데 연유하고 있다.

<表 4>

稅率別稅目數

(1964年)

區分 稅率	品目數	構成比(%)	區分 稅率		品目數	構成比(%)
			區分 稅率	品目數		
無 稅	101	4.9	60	146	7.1	
5%	54	2.6	70	69	3.3	
10	157	7.6	80	170	8.2	
15	279	13.5	90	12	0.6	
20	138	6.7	100	121	5.9	
25	159	7.7	120	1	.	
30	183	8.9	180	10	0.5	
35	137	6.6	250	3	0.2	
40	139	6.7	從 量 稅	21	1.0	
50	163	7.9	合 計	2,063	100.0	

資料：財務部

3. 1967年 關稅率調整의 背景과 内容

1963年 12月에 全面 改編된 關稅率은 그후 別다른 修正 없이 1967年末까지 適用되었으나 그간 經濟開發計劃의 推進과 開放經濟體制로의 接近 등 內外與件이 크게 變化됨에 따라 이에 副應하여 關稅率을 포함한 關稅制度의 全面的인 改編이 불가피하게 되어 1967年 11月에는 다시금 關稅法이 全面 改正(第15次)되었다.

1967年 11月에 실시된 關稅法改正은 「實效關稅保護率」概念에 따른 保護關稅率의⁽¹⁴⁾ 책정 등 關稅率의 조정과 彈力關稅制度의 導入에 의하여 關稅制度의 合理化 및 彈力化를 모색하는데 그 主眼點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內外與件의 變動에 대처하기 위한 措處였다고 할 수 있다. 즉 1962年부터 經濟開發 5개年計劃을 推進한 결과로 產業構造가 变동되고 새로운 產業이 건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輸出入構造도 原料輸入과 工業製品輸出에 置重하는 方向으로 变화되었던 것,⁽¹⁵⁾ 對外의으로는 貿易自由化를 追求하기 위한 開放經濟體制로의 接近을 시도하게 된 것⁽¹⁶⁾ 그리고 對內의으로는 第2次 經濟開發 5개年計劃의 推進에 의한 重化學工業의 育成과 輸出增大를 도모하게 된 것 등 주된 與件의 變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產業構造의 變化와 새로운 產業의 建設로 不均衡하게 된 既存 關稅率構造를 改編하여야 할 必要性과 함께 開放經濟體制에의 移行을 계기로 하여 國內 產業에 대한 過度한 關稅保護를 止揚하는 한편 國內 產業의 國際競爭力を 강화하여야 할 當爲性과 第2次 經濟開發計劃의 目標達成을 위한 關稅政策上の 支援과 輸出增大를 위한 關稅誘因을 擴大하여야 할 必要性을 認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63年 12月에 調整된 關稅率은 平均關稅率(算術平均)이 38.7%에 달하고 있었으나 加重平均關稅率은 16.9%~18.2%(66年度와 67年度), 實效關稅率은 6.4%~6.2%(上同)水準에 이르고 있었으며 1963~67年 期間中 國稅收入에서 占하는 關稅徵收額의 比重은 20.6%에서 19.7%로 떨어지고, 關稅徵收額에 대한 關稅減免額의 比重은 63년의 81.6%에서 67년에는 127.6%로 크게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關稅減免額 중 輸出支援을 위한 關稅減免의 크기가 63년의 10.5%에서 67년에는 25.4%로 높아졌다.

(14) 關稅率構造를 Tariff Escalation方式에 따라 책정하게 되면 製造業에 대한 關稅保護度는 同 名目 關稅率보다 높아진다. 즉 實效保護率은 關稅의 產出物에 대한 補助效果와 投入物에 대한 課稅效果를 다같이 고려하여 책정한 關稅保護水準을 나타낸다. (第IV項 參照).

(15) 重化學工業比率은 附加價值基準(1970年 不變價格) 1961年の 22.3%에서 1967年에는 34.9%로 높아졌고, 輸出構造에 있어서 工產品의 構成比는 同期間 중 21.9%로 부터 70.1%로 급변하였다. 뿐만 아니라 形態別 輸入에 있어서도 資本財의 比重이 13.4%에서 31.1%로 輸出用原資材가 1.7%(64年)에서 13.6%로 크게 늘어났다.

(16) 우리나라 1967年 4月 15日에 GATT에 加入하였고 同年 7月 25日부터 貿易自由化施策의 一環으로서 貿易計劃의 作成에 있어서 輸入禁止 또는 制限品目만을 掲記하는 Negative System를 채택하였다.

<表 5>

關稅의 歲入調達機能과 產業育成機能

(1962~67年)

(單位 : 億원)

	國稅收入 (A)	關稅徵收額 (B)	關稅減免額 (C)	輸出支援을 위한 한關稅減免額 (D)	比 率 (%)			
					(B)/(A)	(C)/(A)	(C)/(B)	(D)/(A)
1962	282	67	29	3	23.8	10.3	43.3	8.7
1963	311	64	55	6	20.6	17.7	85.9	10.5
1964	374	82	72	12	21.9	19.3	87.8	16.5
1965	546	126	97	27	23.1	17.8	77.0	27.8
1966	876	176	203	53	20.1	23.2	115.3	26.3
1967	1,292	254	324	82	19.7	25.1	127.0	25.4

1) C. Frank, K.S. Kim, and L. Westphal, "Foreign Trade Regimes and Economic Development: South Korea," N.B.E.R., 1975.

資料 : 財務部

이같이 關稅減免의 規模가 늘어났던 것은 輸出 및 國內基幹產業의 育成을 위한 關稅政策上의 支援이 擴大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非減免對象品目이 부당하게 높은 關稅를 負擔하게 되었던 것을 의미하며 또 그간 高度의 關稅 및 非關稅障壁에 의하여 奢侈性消費財의 生產이 保護를 받아 奢侈性消費財產業이 상당히 發展하기는 하였으나 그 結果로 輸出 및 國內基幹產業에 配分되어야 할 資本이 誤用되는 弊端도 생겨 났다. 뿐만 아니라 當時의 保護關稅率은 名目關稅率에 의하여 그 保護度를 評價하였던 關係上 國內經濟에 대한 보다 큰 貢獻에도 不拘하고 實効保護가 낮거나 또는 國內經濟에 대한 貢獻이 작음에도 不拘하고 過度한 實効保護를 받게 되는 問題點이 지적되었다.⁽¹⁷⁾

이에 따라 關稅率調整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基本原則이 채택되었다.⁽¹⁸⁾

첫째, 比較生產費原理에 立脚하여 國際分業의 利益을 追求하며 또한 第2次 經濟開發 5개年計劃의 終局目標인 工業化政策과의 相互調和로서 現在의 產業構造를 개선한다.

둘째, 關稅率의 構造를 保護關稅品目, 財政關稅品目, 輸入抑制品目, 無稅品目으로 區分하여 關稅行政力を 保護關稅品目에 集中함으로써 그 實効를 거둔다.

셋째, 保護關稅率의 策定基準은 (1) 比較生產費原理에 의한 附加價值의 大小와 (2) 同一品目에 대한 國內外價格差를 감안하고 (3) 國民經濟上 繁要度에 依함을 原則으로 한다.

넷째, 財政關稅品目은 20%의 均一된 定率關稅를 책정함을 原則으로 하되 (1) 重要產業機械 및 工業用 原資材와 (2) 重要生活必須品의 原料는 例外的인 低關稅率을 책정함으로써 安定된 經濟生活을 維持하며 工業化를 촉진한다.

(17) 1967년 11月 關稅率調整以前의 產業別 實効保護率의 計測과 그 問題點에 대해서는 다음을 參照, 車耕權, 「韓國輸入代替產業에 관한 研究」, 1967年(共同研究).

韓國經濟開發協會, 「韓國產業의 實驗保護率計測結果報告」, 1967. 6.



다섯째, 奢侈性物品에 대하여는 原則的으로 高率의 物品稅를 책정함으로써 消費를 억제하고 國內投資誘引을 防止한다. 反面 國內生產이 불가능한 奢侈品에 대하여도 高率의 關稅를 책정함으로써 輸入을 억제한다.

여섯째, 無稅品目을 최소한으로 축소하여 財政關稅로 轉換한다.

일곱째, 國內產業保護를 강화하기 위하여 混合關稅制—從價·從量選擇稅 또는 併課稅—의 適用범위를 擴大한다.

여덟째, 旅客攜帶品, 郵便小包 등 物品에 대하여는 關稅 物品稅를 統合한 單一稅率(簡易稅率)를 신설하여 通關의迅速을 기한다.

이상과 같은 關稅率調整의 基本原則은 關稅率調整에 앞서 우리나라에 招請되어 關稅率調整方案을 提示하였던 R.I. McKinnon 教授의 構想을 크게反映한 것이었다. McKinnon 教授의 「建議」는 첫째, 關稅品目을 (1) 保護對象品目과 이와直接 關聯된 品目, (2) 財政關稅가 賦課되지 않는 保護不要品 (3) 財政關稅가 賦課되는 保護不要品으로 區分하여 關稅行政의 重點을 保護對象品目에集中하고, 둘째로 奢侈性物品에 대한 消費規制는 關稅보다 物品稅에置重하여야 하고, 셋째로 免稅對象品目的縮小와 財政收入의 確保를 위하여 保護對象品目과 非保護·非課稅品目 그리고 稅率 20%미만의 GATT讓許品目을 除外한 品目에 대하여는 單一稅率 20%를 적용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밖에 保護對象品目的保護度는 比較生產費原理에 의한 附加價值에 의하여 決定되어야 하며, 國際價格으로 評價된 附加價值率이 클수록 高率로 정하고 專用構成材料와 半組立品은 完製品과 동일한 關稅率을 적용하고 汎用性이 있는 構成材料에는 定率關稅 20%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建議하였다.⁽¹⁸⁾

McKinnon 教授의 「建議」에 대하여는當時의 우리나라 經濟現實에 비추어 보아 여러 가지問題點이 지적되었으며 그 중 몇 가지를 列舉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¹⁹⁾

첫째는 比較生產費原理가 理論上妥當性을 갖고 있는 하나 工業化段階에 있는 나라에서는 全的으로 이에 依據하여 稅法을 改正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R. Robinson의 指摘과 같이 比較生產費原理가 有用한 것은 한 나라의 將來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나타내는데 있지 않고 그 나라가 거쳐온 發展의 經過를 說明할 때이다. 一般的으로 比較優位가 생기게 되는 것은 貿易當事國간의 要素賦存量이 差異를 갖기 때문이지만 要素賦存量은 固定된 것이 아니라 技術進步나 國際間의 要素移動에 따라 變化된다. 그밖에 比較生產費原理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反論이 있으나 比較生產費原理는 그 靜態的 性格때문에 經濟發展을 指向하는

(18) 財務部, 稅制改革白書, 1967, pp. 222-23.

(19) Ronald I. McKinnon, "Tariff, Special Customs Duty, and Excise Tax Reform," May 1967.

(20) 財務部, 稅制改革白書, 1967, pp. 196-97. pp. 220-22.

나라에는 適用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고 있는 것이다.⁽²¹⁾

〈表 6〉 關稅率과 物品稅率의 改正原則

(1967年 改正을 위한 提案)

(單位 : 百分率)

區 分 保 護 度	加 工 度	天然產品과原資材		中間製品		完製品	
		最 終 品	專用構成材料	最 終 品	專用構成材料와半組立品	最 終 品	專用構成材料와半組立品
I. 保護對象品과 이에 直接關聯된 品目 (可變關稅率) ¹⁾	(a) 現在 國內生產이 可能한 것 (i) 國際價格에 依한 附加價值가 큰 物品 (ii) 國際價格에 依한 附加價值가 적은 物品 (b) (a)該當物品으로서 現在 國內生產은 없으나 國產品과 直接競合이 되는 것은 (a)에 包含되는 代替品과 同率 또는 그 以下	50 25 25	50 25 25	70 35 35	70 35 35	90 45 45	90 45 45
II. 財政關稅가 賦課되지 않는 保護不 要品	(a) 主로 輸出活動에 投入되는 原資材 ²⁾ (b) 繫要한 食糧	0 0	0 0	0 0	0 0	0 0	0 0
III. 財政關稅가 賦課되는 保護不 要品(I 및 II에 分類되지 않는 모든 殘餘品 목이 包含된다)	(a) 工業用資材와 機械類 (b) 非奢侈性消費財 (c) 奢侈性消費財	20 20 20 +高率의 物品稅 (150%)					

〈註〉 1) I에 該當되는 物品으로서 奢侈性消費財(化粧品) 또는 財政收入目的으로 課稅가 必要한 品目(石油製品)은 物品稅의 課稅對象이 된다. T.V. 라디오 錄音機 等과 같이 같은 系列의 品目에 對하여 消費類型에 따른 隔差를 두어야 할 때에는 關稅는 全部 同率로 하되 物品稅率에 隔差를 두어야 할 것이다.

2) 그 物品의 約 80% 以上이 輸出用原資材로 使用되는 品目은 名目的인 關稅率은 無稅로 策定하여야 한다. 輸出用原資材로 使用되는 其他의 輸入物品에 對하여는 계속 關稅가 免稅 또는 減稅되어야 한다.

資料：財務部, 稅制改革白書, 1967.

둘째로 역시 比較生產費 原理에 대한 反論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保護關稅率의 책정에 있어서 國際價格으로 評價한 附加價值率만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現在까지 전시된 많은 生產業體가 投資選定이 잘못되었다는 理由로 閉門하여야 할지도 모른다」는⁽²²⁾ 것이 지적되었다. 經濟發展은 構造的 轉換 내지 變化를 의미하고 있으나 經濟部門간에서 보면 農業으로부터 工業에의 轉換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構造的 轉換過程에서 輸入代替產業을

(21) Charles P. Kindleberger, *Economic Development*, 2nd ed., 1965, pp. 295-304.

(22) 財務部, 稅制改革白書, 1967年, p. 220.

育成하기 위해서는 國家의 保護가 불가피하게 되며 그러한 國家의 保護는 새로운 比較優位의 基盤을 조성하기 위한 費用이기도 하다. 이는 바꿔 말하면 保護關稅率은 단지 世界市場價格으로 評價한 附加價值率만이 아니라 內外生產費의 差異나 國民經濟의 繁要度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保護關稅率의 책정에 있어서 國內產業保護의 實效를 높이기 위하여 專用構成材料와 半組立品에 最終製品과 同一한 關稅率을 적용하게 되면 「工業의 系列化를 지연시키고 國產化比率을 낮게 할 수도 있다」는 危懼心이 表明되었다. 天然產品이든 原資材이든 또는 中間製品이든 完製品이든 간에 最終製品과 專用構成材料 및 半組立品에 대한 關稅率이 각각 다르면 同一한 附加價值率을 갖기 때문에 同一한 保護關稅率이 적용되어야 할 品目이라 할지라도 實效保護率이 서로 다르게 되어 資源配分을 歪曲化시키는 結果를 招來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McKinnon 教授의 建議는 關稅保護의 實效를 기한다는 點에서合理的인 提案이기는 하지만 開發途上國의 輸入代替工業化가 消費財 및 組立 加工生產에서부터 中間財 그리고 原資財生產으로 擴大되는 過程을 밟는다면 工業化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關稅率構造는 最終製品보다 專用構成材料 및 半組立品에 대한 關稅率이 낮아야 할 것이다.⁽²³⁾ 그밖에 開發途上國은 先進國에 比하여 規模의 經濟나 技術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最終製品의 價格差를 關稅로 保護하여 주더라도 先進國의 製品에 비하여 競爭力이 弱하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輸入代替工業化를 촉진하고 工業의 系列化에 의하여 國產化比率를 높이기 위해서는 最終製品보다 專用構成材料 및 半組立品에 대한 關稅率를 낮게 책정하는 것이 所望스럽다는 見解가 提起될 수도 있다. 그러나 兩者間의 關稅率이 지나치게 큰 差異를 갖게 되면, 結局 組立 加工生產만을 保護하게 되는 弊端이 생겨 나게 될 수밖에 없다.

넷째로 輸入되는 物品의 80%이 상이 輸出活動에 投入되는 原資材와 繁要한 食糧(米穀 등)에 대하여는 關稅를 無稅로 책정하여야 한다는 建議에 대해서도 輸入物品 중 그 80%이 상이 輸出用原資材로 使用되는 品目이 없으며, 食料에 대한 關稅는 農民所得의 保護를 위하여 高率로 策定되어야 한다는 反論이 제시되었다.⁽²⁴⁾

끝으로 保護對象品目과 財政關稅가 賦課되는 않는 保護不要品 그리고 稅率 20%未滿의 GATT 讓許品目를 除外한 財政關稅가 부과되는 保護不要品에 대해서는 20%의 定率關稅를

(23) 이 같은 見解는 바로 加工工業을 保護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主張과 결부되어 있다.

(24) 이러한 反論은 關稅率조정에 채택되어 1次產品에 高率關稅를 책정하게 되었던 結果로 다른 나라에 비하여 製造業部門보다 農業部門이 더 큰 關稅保護를 받는 異例의 인 현상이 招來되었다고 지적되어 있다. Kwan Suk Kim, Outward-looking Industrialization Strategy : The Case of Korea, Working Paper 7407, Sept. 1974, p. 33.

부과하여야 한다는建議에 대해 서도 (1) 國民經濟上 重要한 物品과 同 原料(例컨대 生고무
原綿 原木등에 대한 定率關稅는 「코스트·舛시」效果를 수반할 것이며 (2) 重要產業機材에
대한 定率關稅의 부과는 投資意欲을 沮害하고 (3) 奢侈品에 대한 定率關稅는 설사 高率物
品稅의 부과에 의하여 그 數量를 抑制하더라도 輸入을 억제할 수 없고 (4) 工業發展을 위
해서는 加工度에 따른 關稅率의 差等이 불가피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상과 같이 1967年 11月의 關稅率調整은 McKinnon 教授의 建議와 우리 經濟의 現實을 土
台로 하여 설정된 基本原則에 따라 행하여졌으며 그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이 要約된다.

첫째 發展跳躍段階에 있는 工業의 保護를 강화하기 위하여 (1) 國內生產品과 競合되는
物品의 關稅率을 適正線까지 引上하고 (2) 國內生產이 되는 部分品과 原資材는 同 製品과
同率로 책정하여 (3) 輸入工業用 原資材의 稅率은 引下 또는 据置한다.

둘째 中心企業育成, 雇傭增大, 勞動集約的 工業의 誘致, 外國의 斜陽產業收容態勢의 확
립을 위하여 (1) 中小企業에 사용되는 原料 및 精密施設財의 稅率은 引下 또는 据置하고
그 製品에 대한 稅率은 引上한다. (2) 國際單位에 未及한 生產規模을 감안하여 加工度에
의한 關稅의 差異를 크게 둔다.

셋째, 農漁民所得增大를 위하여 1次產品에 高率關稅를 적용하고, 同 生產原料에 대하여는

<表 7>

關稅率策定基準表(1967年 改正)

(單位: 百分比)

保 護 度		經濟的 用途別 또는 加工度	天然產品과 原 資 材	中 間 製 品	完 製 品
I. 保護對象品目	(1) 高率關稅保護品目	60	80	150	
	(2) 低率關稅保護品目	25	40	50	
II. 財政關稅品目	(1) 工業用原資材 외 重要產業用機械類	10~20	10~20	10~20	
	(2) 其他	20	20	20	
III. 無稅品目	國策上 또는 國際慣例上 特殊取扱 品目	0	0	0	
IV. 輸入抑制品目	不要不急한 品目	60~80	100	100~250	

註 : 1. 保護對象品目의 關稅率은 I欄에 表示된 上下限(25~60%, 40~80%, 59~150)의 範圍내에서
附加價值, 內外價格差 및 繁要度에 依하여 策定한다.

2. 國產品과 直接 競合되는 代替品의 關稅率은 當該 國產品과 同率로 定한다.

3. 財政關稅品目의 關稅率은 II欄에 表示된 바와 같이 工業用原資材 외 重要產業用機械는 10~
20%, 其他品은 20%의 定率關稅로 策定한다.

4. 國策上 또는 國際慣例上 特殊取扱品目은 第III欄에 表示된 바와 같이 無稅로 策定한다.

5. 國民經濟上 輸入을 抑制할 必要가 있는 物品은 第IV欄에 表示된 바와 같이 60~250%로 策定
한다.

6. 大部分이 國內에서 生產되는 專用構成材料는 同製品과 同率로 한다.

7. 現像한 映畫필름, 原糖, 糖密은 從量稅率로 하고 其他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物品의 稅率은
混合關稅率(從量·從價 選擇稅, 從量·從價 併課稅)을 採擇한다.

資料 : 財務部, 稅制改革白書, 1967. pp.223-24.

低率로 정한다. 즉 (1) 各種肥料를 無稅品目으로 정하고 (2) 各種農藥을 一般化工藥品보다
低率로 정한다. (3) 養魚用稚魚와 養殖用稚貝 등을 無稅品目으로 하고 同器具의 稅率은
低率로 정한다. (4) 農水產物은 高率關稅를 적용한다.

넷째로 國內產業의 體質改善과 運營의 合理化, 消費者保護 등을 위하여
(1) 國民經濟上 繫要한 物品 및 同原料의 稅率을 引下 또는 据置하고 (2) 國際競爭力이 強
된 物品의 關稅率은 獨占利潤을 排除하기 위하여 低率로 책정한다.

끝으로 貿易自由化에 對備하여 급격히 증가할 不要不急品의 輸入을 억제하기 위해 特定
物品의 稅率를 대폭 引上한다.

이상과 같은 稅率調整方向에 따라 종래 2,063개 品目으로 구성되었던 關稅率表는 3,168개
品目으로 細分되었으며, 稅率別品目分布를 보면 20%의 稅率이 적용되는 品目數가 1,065개品
目(33.6%)으로서 壓到的인 比重을 점하였다. 또한 關稅品目을 性質別로 구분하여 보면 保護
對象品目이 1,220개 品目(34.8%)으로 그 比重이 財政關稅品目 중 「其他」 다음으로 컸다.⁽²⁵⁾

〈表 8〉 1967年 改正前後 稅率別 品目數對比

區 分 稅率	改 品 目	正 數	區 分 稅率	改 品 目	正 數		
						改 品 目	正 數
無 稅		101		147	70%	69	187
5%		54		28	80%	170	60
10%		157		251	90%	12	
15%		279		97	100%	121	277
20%		138		1,065	120%	1	7
25%		159		105	150%		31
30%		183		24	180%	10	15
35%		137		119	250%	3	5
40%		139		214	從 量 稅	21	20
50%		163		327	從 量 價 併 課		9
60%		146		174	從 量 價 擇 一		6
				計		2,063	3,168

資料：財務部

(25) 1967年 11月 改正 關稅率構造는 아래와 같다.

1. 保護對象品目	1,220個 品 目
2. 財政關稅品目	
가. 工業用原資材, 產業機械	376個 品 目
나. 其 他	1,065個 品 目
3. 無稅品目	147個 品 目
4. 輸入抑制品目	360個 品 目
計	3,168個 品 目

<表 9>

1967年 改正前後 關稅率構造의 對比

(單位: 百分比)

保護度	經濟的用途別 또는 加工度	天然產品斗原資材		中間製品		完製品	
		改正前	改正後	改正前	改正後	改正前	改正後
I. 保護對象品目	(1) 高率關稅保護品目	60 2	60 2	80 2	80 2	150 2	150 ~
	(2) 低率關稅保護品目	10	25	25	40	25	50
II. 財政關稅品目	(2) 工業用原資材斗 重要產業 用機械類	5~25	10~20	15~35	10~20	5~25	10~20
	(1) 其他	25~35	20	50~60	20	50~80	20
III. 無稅品目	國策上 또는 國際慣例上 特殊 取扱品目	0	0	0	0	0	0
IV. 輸入抑制品目	不要不急한 品目	80~60	80~60	120~100	100	250~100	250~100

資料：財務部

한편 1967年 11月의 關稅率調整에 따른 關稅率構造를 改正前과 比較하여 보면 <表 9>와 같이 保護對象品目에 있어서는 低率關稅保護品目的 稅率이 모두 2倍 前後로 조정되었고, 財政關稅品目的 適用稅率은 거의 모두 引下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4. 1973年 關稅率調整의 必要性과 그 內容

關稅政策이 資源配分機能이나 國際收支의 改善 그리고 財源調達機能을 다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關稅率調整에 의해 關稅率構造를 適正한 水準에 接近시킴으로써 資源配分의 效率를 높여야 한다. 1967年 11月에 실시된 關稅率調整은 保護關稅品目을 財政關稅品目이나 其他品目과 區別하여 이에 實效保護率의 概念을 導入하는 한편 加工度에 따른 稅率隔差를 크게 두어 關稅保護의 實效를 기하도록 하였으나 第3次 經濟開發 5개年計劃의 推進과 輸出의 複起적인 增大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關稅率을 全面 調整하여야 할 必要가 생기게 되어 1973年 2月의 關稅法改正에 따라 關稅率構造가 다시금 全面 改編되었다.

1967年 11月에 調整된 關稅率構造는 當時의 產業構造와 工業化戰略을 반영하여 輸入原資材의 加工・組立段階의 消費財產業을 保護하는데 치중하였던 關係上 消費財 및 組立・加工產業을 高率로 保護한 反面에 原資材나 資本財는 低率關稅가 부과되고 또 國民經濟上 繫要한 物品에도 低率關稅가 적용되었으나 奢侈品에는 高率關稅가 부과되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關稅率構造는 消費財 및 完製品에 대하여 過度하고 偏向的인 保護를 부여하였던 反面에 原資財 및 資本財에 대한 關稅保護가 未洽하여 重化學工業 및 原料產業의 開發과 育成에 否定的인 寄與를 하게 되었다.⁽²⁶⁾

뿐만 아니라 67年 11月에 조정된 關稅率이 장기간 적용되는 동안 國內에서 新規產業이 積極하게 되자 一部 產業에 있어서는 原料에 대한 關稅率이 最終財에 대한 稅率보다 높아

〈表 10〉

稅率이 不均衡한 品目の例

(單位: 百分比)

原 料	稅 率	製 品	稅 率
酸 化 알루미늄	20	알루미늄塊	10
알루미늄 스트롤	40	알루미늄薄	25
소금	40	소다灰	20
현미경렌즈	40	현미경	20
E. D.	20	V. C.	15
亞鉛의帶	50	亞鉛의薄	20

資料：全國經濟人聯合會，「關稅政策과 彈力關稅制度의 運營」，1973。

지는 稅率의 不均衡이 생겨나게 되어 그 實效保護가 未洽하게 되는 問題點도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1972年부터 推進하고 있었던 第3次 經濟開發5개年計劃은 農漁村의 革新的開發 重化學工業의 建設 그리고 社會環境의 개선을 위한 社會間接資本의 擴充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關係上 關稅政策에 있어서도 第3次 計劃의 優先順位에 따라 이를 支援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그밖에 關稅協力理事會의 ⁽²⁷⁾ 勸告도 있었거니와 商品의 多樣化에 따라 關稅率表의 品目分類를 合理化하여 國際化趨勢와 現實에 符合되도록 關稅率構造를 조정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상과 같은 關稅率調整의 必要性을 背景으로 하여 1973年 2月의 關稅率改正은 다음과 같은 基本方向에 따라 실시되었다. ⁽²⁸⁾

(1) 中間財 및 資本財 등 새로이 開發되는 商品에 대한 過少保護를 適正水準으로 引上하여 產業構造의 高度化를 촉진한다.

(2) 產業基盤이 확립된 最終消費財에 대한 稅率을 引下하여 國內產業의 能率化를 촉진

(26) 1967年的 關稅率조정 이후 平均稅率은 國內生產與否, 加工度, 輸入規制與否에 따라 큰 差異를 갖고 있었다. 1968年 現在 加工度別 單純平均 稅率은 다음과 같이 分析되어 있다.

區 分	稅 率(%)
國內 生產 可能 物品	
原 料	27.7
半 製 品	45.8
完 製 品	72.2
國內 生產 不可能 物品	
原 料	20.8
半 製 品	23.4
完 製 品	20.0

資料：全國經濟人聯合會，前揭書，p. 19.

(27) 우리나라 1968年 7月 2日에 關稅協力理事會에 加入하였으며 同理事會는 1972年부터 BTN改正案을 적용하도록 勸告한 바 있었으나 當時 우리나라 이를 制度改編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다.

(3) 第3次 經濟開發5개年計劃事業인 農漁村開發事業, 重化學工業의 建設 및 社會間接資本의 擴充을 頑固 支援한다.

(4) 生活必需品, 重要產業用資材 등一部 主要物品에 대한 과도한 高稅率을 引下하여 物價安定에 기여하고 關稅減免幅의 擴大誘發을 방지한다.

(5) 國內生產이 불가능한一部 奢侈性物品의 稅率을 引上하여, 輸入規制의 效率化를 가하고 消費類型의 전진화를 도모한다.

(6) 關稅率表의 品目分類를 合理的으로 改編하여 明瞭한 關稅體制를 확립한다.

(7) 物價安定의 見地에서 즉각적인 稅率引上이 소망스럽지 못한 物品은 物價의 安定基調가 고착될 때까지 暫定稅率制度를 채택하여 關稅負擔이 현재의 水準(特關稅포함)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에 따라 67年 11月의 關稅率調整과 같이 關稅率의 機能別構造를 保護關稅, 輸入規制關稅, 財政關稅, 無稅로 구분하고 經濟的用途 또는 加工度와 別目別로 關稅率基準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元來 73年 2月의 關稅率調整은 그目的이 1967年 關稅率調整이후에 발생한 產業構造의 변화와 第3次 經濟開發5개年計劃의 推進에 따른 與件變動에 대응할 수 있도록 關稅率構

〈表 11〉

1973年 改正關稅率 策定基準

(單位: 百分比)

品目別 機能別		經濟的用途 또는 加工度	天然產品 또는 基礎原料材와 產業用機械	中間製品	完製品
保護關稅品目	① 高率保護品目	50~90 60 20	60~70 80 20	80~100 150 50	80~100 150 50
	② 低率保護品目	30~40 25	40~50 40	50~70 70	50~70 50
輸入規制關稅品目	① 國產不能品目	60~80	80~100	100(100~150)	150
	② 煙草·酒類·高級乘用車 등	(60~80)	(100)		
財政關稅品目	① 主要產業用機械 및 基礎原資材	5~10(5~15)	5~15(5~15)	5~15(5~15)	5~15(5~15)
	② 農水產用緊要品目	5~10(5~15)	5~15(5~15)	5~15(5~15)	5~15(5~15)
	③ 其他	20(20)	20(20)	20(20)	20(20)
無稅品目	國際慣例 또는 國策上特殊取扱品目	○	○	○	○

註: 1. 50%의 稅率은 煙草類·酒類·高級乘用車 등 國際的及 高級消費製品에 限하여 適用

2. 從量稅만으로 保護하기 어려운 物品은 從量從價 選擇稅로 策定

3. 映畫用器具은 從量稅로 함.

4. ()내는 1968年 稅率

資料: 財務部

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있었으나 그 첫째의 特徵은 保護關稅率體系를 關稅品目의 價格이 아니라 그 附加價值에 관련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適正保護水準(the proper level of protection)⁽²⁹⁾을 기초로 하여 實效保護(effective protection)概念에 따라 책정한데 있다. 適正保護水準이란 大部分의 輸入物品에 적용되어야 할 中心稅率로서 (1) 換率 (2) 國民所得 및 輸入需要의 증가율 (3) 物價上昇率 (4) 輸出에 대한 補助의 정도 (5) 輸入制限(數量制限) 및 免稅와 같은 여러 가지 要因에 의하여 규정되고 항상 变動하지만 均衡換率을 想定할 때 輸入費用을 均衡換率下에서의 輸入費用과 同一하게 만들어 주는 適正한 關稅保護水準을 의미한다. 바꿔 말하면 外國의 購買力(美國과 日本)과 우리나라의 購買力を 均衡화시킬 수 있는 換率과 實際適用換率과의 差異를 補完하는 關稅保護水準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關稅率策定基準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實效保護率概念에 따라 關稅保護體系를 설정하되 實效保護率을 보다合理化시키기 위하여 完製品의 稅率을 引下하는 반면에 機械 및 原料에 대한 稅率을 引上하여 高率과 Low率을 점진적으로 상호 接近시켜 稅率隔差를 좁힐으로써 資源分配의 歪曲化를 是正해 나가는 方向을 채택하도록 하였다.⁽³⁰⁾

셋째로 輸入規制關稅品目에 대해서도 完製品과 原料・中間財에 대한 稅率간의 隔差를 좁히되 國內生產이 不可能한 奢侈性物品에 한하여 그 稅率을 保護稅率보다 높게 정하고 國內生產이 가능한 物品에 대하여는 그 稅率을 保護稅率과 같은 水準으로 책정하였다. 다만 國際的인 高級消費用製品(輸入規制對象)에 한하여 最高率 150%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表 12〉

關稅 機能別 品目構成

區 分	1967年 改正		1973年 改正	
	品目數	構成比(%)	品目數	構成比(%)
保護關稅品目	1,137	36	1,575	39
輸入規制關稅品目	455	14	131	3
財政關稅品目	例外品目 (15%以下)	374	12	616
	定率品目 (20%)	1,060	33	1,444
無稅品目	148	5	219	6
計	3,174	(100)	3,985	(100)
平均關稅率	38.8%		31.3%	

資料：財務部

(29) John B. Sheahan, "Issues Involve in the Proposed Tariff Reform," Note for discussion, Aug. 1971.

(30) 國內加工費와 國內生產投入費用을 合算한 附加價值概念을 근거로 하여 책정한 實效保護率이 實際의 實效保護率에 비하여 過少 評價되는 弊端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財政關稅品目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生活必需品과 重要產業用 機資材 등에 대해서는 低稅率을 적용하고 定率品目에 대하여는 역시 종전의 20%水準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1973年 2月에 실시된 關稅率調整의 具體的 内容을 보면 먼저 稅率表의 品目數는 종전의 3,174品目에서 3,985品目으로 늘어나고, 關率機能別 品目構成을 보면 輸入規制關稅品目이 크게 줄어들었던 반면에 그밖의 品目은 모두 늘어났으며 平均關稅率은 종전의 38.8%에서 31.3%로 크게 떨어졌다.

한편 73年 關稅率調整은 國內產業을 保護하되 그 基盤이 確立된 既存產業의 過當保護率을 引下하여 產業의 自立化와 能率化를 촉진하는데 重點은 두었으나 이에 따라 〈表 13〉과 같이 많은 最終財에 대한 過當保護稅率이 크게 引下되었다. (31)

〈表 13〉 過當保護稅率의 引下 (1973年 改正)

品名	1968年 稅率	改正稅率	品名	1968年 稅率	改正稅率
가) 食品工業生產品			空氣調節機	100%	80%
調製粉乳	150%	80%	冷藏庫	100%	80%
調製食料品	100%	80%	製粉機械	100%	80%
菓子類	150%	80%	脫穀機	70%	50%
鳴類	100%	80%	발풍기	70%	50%
나) 繊維와 同製品			라) 其他		
아크릴纖維	60%+250원	70%	치약	100%	80%
毛織物	100%	80%	신발類	100%	80%
양탄자	150%	100%	바니쉬페인트	70%	60%
메리야스編物	100%	80%	잉크類	70%	60%
亞麻系	80%	50%	樹脂의 製品	100%	80%
장갑류	150%	100%	化粧品	150%	100%
衣類	150%	100%	寫真用印畫紙	100%	80%
다) 機械類					

資料：全國經濟人聯合會, 「關稅政策斗彈力關稅制度의 運營」, 1973. 8.

이와 함께 新規產業에 대하여는 適正保護水準을 유지하기 위하여 關稅率이 각각 引上되었다. (表14 參照)

그밖에 重化學工學의 건설, 農漁村開發, 社會間接資本의 擴充 등 第3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지원할 목적으로 關聯品目的 關稅率을 대폭 引下하였다. 例컨대 重化學工學의 支援을 위해 基礎原資材인 石油 코오크스에 대한 適用稅率을 종전의 10%에서 5%로 引下하는 한편 製鍊用 酸化알미늄의 稅率(20%)은 5%로, 合成고무用 스티렌(15%), 同 伸展油(25%)

(31) 1967年 11月의 關稅率조정 以前에 있어서도 消費財에 대한 實效保護率이 높았고, 業種別로 보면 人造纖維織物, 家庭用 電氣機器, 化粧品, 化學纖維 등에 대한 實效保護率이 높았다.
車軒權, 「韓國輸入代替產業에 관한 研究」, 1967(共同研究) 參照

〈表 14〉

新規産業의 過正保護 (1973年 改正)

品名	1968年 稅率	改正税率	品名	1968年 税率	改正税率
가) 化學工法生產品 無水平酸 酸化チタ늄 顏料	20% 20% 40%	50% 30% 20%	월드스크린와이파 爐用비어너部分品 다) 其他 合金鋼의 板帶 高炭素鋼의 板帶 여과지(特定形狀 으로 切斷한 것)	20% 20% 10% 10% 20%	50% 30% 15% 15% 40%
나) 機械類 手持式工具部分品	20%	30%			

資料：全國經濟人聯合會，「關稅政策과 彈力關稅制度의 運營」，1973. 8.

는 無稅로, 工業用 소금은 종전의 40%에서 10%로 각각 引下되었다. 施設用 機資材도 耐火벽
들(SK 37以下)의 稅率이 종전의 70%에서 40%로 引下된 것 이외에 石油化學用 液體izoph
(5%), 蒸溜裝置(20%)등이 無稅로 되었다. 또한 農漁村開發의 支援을 위해서는 각종 肥料
에 대한 關稅率을 종전과 같이 無稅로 据置하는 한편 農藥原料의 稅率을 20%에서 5%로,
菜蔬 種子의 稅率(15%)를 無稅로, 粪소 및 種畜(각 10% 적용)稅率을 無稅品目으로 각각
전환하였다. 그밖에 飼料用 속수수, 摧乳機 등에 대한 稅率도 대폭 引下되었다. 끝으로 社會
間接資本의 擴充을 지원할 목적으로 電話交換機, 搬送用通信機器의 稅率이 50%에서 25%
로 鐵鋼製貨物車의 稅率이 50%에서 無稅 또는 5%, 20%로 각각 引下되었다.

이에 따라 稅率別 稅目數의 構成을 보면 關稅率 50% 및 그以下の 稅率이 적용되는 品
目數는 종전의 74%에서 83%로 높아졌고, 80%를 초과하는 稅率의 比重은 종전의 10.7%
에서 2.8%로 크게 低下되었다. 특히 100% 또는 그以上の 高率關稅가 적용되는 品目數도
종전의 335개 品目(10.6%)에서 110개 品目(2.8%)로 크게 줄어들었다. (附表3 參照)

IV. 關稅의 國內產業保護效果分析

關稅의 國內產業保護效果는 보통 關稅率表上의 稅率(法定稅率 또는 表面稅率)이 아니라
實效保護率(effective rate of tariff protection)에 의하여 計測된다. 實效保護概念은 產業間
의 生產關係에 관한 認識과 所與된 保護的措置가 補助效果와 함께 課稅效果를 갖고 있다
는 認識에 그 土臺를 두고 있다. 즉 이 概念은 固定된 投入一產出關係와 國內生產者에게
補助效果를 주는 關稅가 投入物에 대하여는 課稅效果를 갖는다는 認識에서 부터 出發하고
있다. ⁽³²⁾

(32) W.H. Corden, *The Theory of Protection*, 1971.

Bela Balassa, *The Structure of Prote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1971.

表面關稅率은 비록 그 稅率이 낮더라도 輸入制限이 가하여질 수도 있고, 實際의 關稅率에 있어서는 關稅減免이 폭넓게 적용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加工度에 따라 關稅率의 隔差(tariff escalation)가 주어지고 있을 경우 投入物에 대한 關稅率의 차이에 따라 關稅保護效果는 表面稅率과 차이를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關稅保護를 나타내는 적절한 尺度가 될 수 없다. 또한 表面關稅率이 아니라 名目關稅率에 의하여 國內產業保護效果를 計測할 수도 있다. 名目關稅率은 表面關稅率을 輸入價格(CIF)에 적용하여 산출한 關稅率이며 단순히 世界市場價格과 國內市場價格간의 乖離을 나타내는 比率이라고 할 수 있다. CIF價格대신에 FOB價格으로 關稅를 評價하거나 輸送費 등의 差異가 있으면 단연히 名目關稅率은 表面關稅率를 下廻하게 된다. 또한 關稅目的으로 輸出國의 國內價格을 利用할 경우 輸出國이 輸出商品에 差別價格을 적용하거나 不當한 廉價를 적용하게 되면 輸出國의 國內價格은 輸出價格보다 높고 이를 關稅評價의 기준으로 사용할 때 名目關稅率은 表面關稅率보다 높아진다. 따라서 名目關稅率도 實質的인 關稅保護의 程度, 즉 關稅 및 輸入制限이 갖는 資源轉用效果를 적절히 나타낼 수 있는 指標는 아니다.

實效關稅保護率은 일반적으로 世界市場에 있어서의 附加價置를 넘는 國內附加價置의 超過比率이라고 定義되며 다음과 같은 公式으로 나타날 수 있다. ⁽³³⁾

g_j 는 j 产业의 實效保護率, P_{dj} 는 j 製品의 國內價格, P_{wj} 는 그 世界市場價格, a_{ij} 는 j 製品의 「코스트」에서 占하는 i 投入財의 比率, P_{wi} 는 i 投入財의 世界市場價格, t_j 는 j 製品에 대한 名目關稅率, t_i 는 i 投入財에 대한 名目關稅率, t_i^* 는 2개 이상의 投入財에 대한 加重平均關稅率, a_{ij}' 는 國內價格(關稅賦課後)에 의한 j 製品의 「코스트」에서 占하는 i 投入財의 比率(投入系數)를 각각 의미한다.

公式 (1)은 단순히 實效保護率이 國內附加價值와 世界市場價格에 의한 附加價值간의 比率差異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公式 (2)는 實效保護率이 j 製品에 대한 名目關稅率과 j 設

(33) Corden, *The Theory of Protection*, op. cit., pp. 35-40.

入財에 대한 名目關稅率 그리고 世界市場價格에 의한 投入係數(aij)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끝으로 式 (3)은 投入一產出資料을 이용하여 實效保護率을 계측할 경우 널리 利用되는 式이며 式 (2)를 变形시킨 것이다.

이들 實效保護率에 관한 式은 國內生產에 있어서도 輸出國과 같은 製品生產單位當 中間投入이 必要하지만 (固定投入係數의 決定) 모든 中間投入物이 交易對象이 되기 때문에 保護는 단지 特定한 加工過程에서 발생하는 要素報酬에 영향을 미친다는 假定에 서 있고 實效保護率의 計測方法은 非交易投入의 取扱方式에 따라 Balassa 方法과 Corden 方法으로 大別되고 있다. 前者は 特定한 加工活動에서 발생한 附加價值만을 對象으로 삼게 되지만 後者은 非交易對象製品을 公급하는 國內產業에서 간접적으로 창출된 附加價值도 아울러 考慮하게 된다.

한편 R. McKinnon 은 國內附加價值와 世界市場價格에 의한 附加價值간의 比率差異로 實效保護率을 정의하되 國內價格이나 世界市場價格에 의한 生產額에서 역시 國內價格이나 世界市場價格으로 評價한 輸入 投入財의 價格을 차감한 殘餘分을 附加價值로 규정한다.⁽³⁴⁾ 즉 世界市場價格에 의한 附加價值는 世界市場價格에 의한 國內生產額에서 輸入 投入物의 CIF 價格을 차감하여 구하고, 國內價格에 의한 附加價值는 關稅賦課額만큼 늘어난 生產額에서 關稅賦課額만큼 引上된 輸入投入財의 國內價格을 차감하여 구하게 된다. 이때 輸入投入物에는 專用 또는 非專用 投入財(原資財)가 모두 포함된다.

McKinnon 方式에 의하여 附加價值를 정의하고 實效保護率을 설정하게 되면 (1) 製品의 價格에 있어서 國內生產 投入財가 占하는 比重이 클수록 實效保護率을 過少하게 評價하는 程度가 커지고⁽³⁵⁾ (2) 國內生產 投入財에 포함되어 있는 間接 輸入分을 推定하기가 어렵고 (3) 特定한 產業에 대한 實效保護率이 當該產業의 附加價值가 아니라 經濟全體(nation's)의 附加價值를 근거로 하여 산출하게 된다는 問題⁽³⁶⁾가 있다. 그러나 첫째 問題는 製品과 中間投入財에 대한 稅率隔差를 출입으로써 實際의 保護率과의 乘離를 좁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間接 輸入分을 정확하게 推定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概略的인 推定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끝으로 國內生產 投入財의 使用에서 생겨 나는 문제는 解決이 가능한 문제는 아니지만 任意의 단순한 假定에 의하여 國內生產 投入財의 國內價格과 世界市場價格간의 平均比率을 상정함으로써 國內生產 投入財의 國內價格을 轉換시켜 볼 수도 있고 또 關稅率간의 差異를 좁힘으로써 誘因의 歪曲化를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34) R. McKinnon, "The Protected List and Procedures for Setting Tariffs," July 1967.

(35) Bela Balassa, "The Korean Tariff Reform of 1971; An Evaluation", Sept. 1971.

(36) 前記한 J.B. Sheahan에 의한 지적이다.

本研究에서는 McKinnon 方式에 의하여 1966年 및 1973年 產業聯關分析資料를 利用하여 1966年과 1973年の 實效保護率을 計測하였으나 이는 1967年 11月의 關稅率調整이나 73年 2月의 關稅率調整이 기본적으로 McKinnon方式에 의거하였다고 볼 수 있고 또 作業量을 즐이는데도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 研究에서 計測한 實效保護率은 McKinnon 方式에 의하여 間接輸入分의 推定이 어렵기 때문에 生產額에서 直接輸入分만을 차감하여 산출한 附加價值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³⁷⁾

먼저 法定關稅率의 推移를 보면 1966年에는 產業平均 51.41%에 비하여 製造業部門은 69.11%로서 餘他產業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으나 이를 製造業部門別로 보면 食飲料品이 108.43%, 織維가 82.72%로서 그 平均關稅率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KDI 研究報告에 의하면 1968年 現在 產業別 法定關稅率(平均)은 農業이 36%, 鑄業이 9.6%, 製造業이 58.8%, 全交易對象이 49.4%로 計測되어 있다(表 17参照). 이를 1966年과 비교하여 보면 1967年 11月의 關稅率調整에 따라 農業部門의 平均 關稅率이 높아졌던 反面에 鑄業 및 製造業部門 그리고 모든 交易對象品目에 대한 關稅率이 각기 下向調整되었던 것을 알 수 있으나

〈表 15〉 法定關稅率
(產出額에 의한 加重平均)

(單位 : 百分比)

	1966	1973
農林水產業	32.22	25.42
鑄業	12.49	10.67
製造業	69.11	51.29
食飲料品	108.43	72.07
織維	82.72	74.57
기타輕工業	45.94	50.10
化學工業	36.63	75.29
金屬工業	30.28	32.83
機械工業	49.64	21.42
產業平均	51.41	44.12

이는 바로 67年 11月의 關稅率調整內容과 一致한다. 다음에 1973年度 產業別 平均 法定關稅率을 1966年度 또는 1968年度(KDI 資料) 計測과 비교하여 보면 鑄業部門을 除外하고 關稅率이 전반적으로 引下조정되었던 것을 알 수 있으나 이 같은 傾向은 73年 關稅率調整에서 平均關稅率이 종전의 38.8%에서 31.3%로 크게 引下되였던 것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1966年과 1973年을 대상으로 하여 製造業部門別 平均關稅率을 比較하여 보면 化學

(37) 1973年 產業聯關表 基本表部門 153개 部門 중 建築, 서어비스部門을 제외한 123개 實物生產部門을 대상으로 하여 名目關稅率(產出 및 投入), 實效保護率을 計測하였다. 法定關稅率은 당해年 度의 關稅率表를 利用하여 구하였다. 部門統合內容은 附表2 參照.

工業의 平均關稅率이 현저하게 높아졌던 反面에 食飲料品, 纖維, 機械工業의 平均關稅率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나 이는 73年 關稅率 조정에서 過當保護對象인 食品工業, 纖維, 機械類 등에 대한 關稅率이 引下된 反面에 化學工業生產品 등 新規產業에 대한 關稅保護가 강화되고 第3次 5個年計劃의 支援을 위하여 施設用機材, 農業機械, 通信・輸送機器 등에 대한 關稅率이 크게 引下되었던 것을 反映하고 있다.

다음에 名目關稅率의 變化를 보면 먼저 1966年이나 1973年을 不問하고 法定關稅率과 名目關稅率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66年에 있어서는 產業平均 名目關稅率은 13%程度로 計測되었으나 이는 法定關稅率의 產業平均 51.41%의 약 4分의 1程度에 지나지 않는다. KDI 計測에 있어서도 1968年度 全交易對象에 대한 名目保護率은 12.6%, 法定保護率에 대한 比重은 25.51%程度이다. 한편 1973年的 產業average 名目關稅率은 6.99% 水準으로 크게 떨어졌으나 이는 實效關稅率이 66年的 6.4%에서 68年에는 7.1%로 높아졌다

〈表 16〉

名 目 關 稅 率

(生產額에 의한 加重平均)

(單位: 百分比)

	1966		1973	
	名目關稅率	法定關稅率 에 대한 比率	名目關稅率	法定關稅率 에 대한 比率
農林水產業	15.35	47.64	3.53	13.89
製造業	10.42	83.43	10.17	95.31
飲食料品	11.20	16.21	8.32	16.22
纖維	27.48	25.34	18.52	25.70
其他輕工業	3.50	4.23	1.46	1.96
化學工業	10.02	21.81	5.84	11.66
金屬工業	13.96	38.11	12.57	16.70
機械工業	9.39	31.01	6.14	18.70
產業平均	27.12	54.63	5.73	26.75
	13.00	25.29	6.99	15.84

가 1973年에는 4.6%로 크게 떨어졌던 關稅減免規模의 극격한 擴大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產業別 名目關稅率에 推移를 보면 農水產部門의 平均關稅率이 66年的 15.35%에서 1968年에는 16.6%(KDI資料)로 높아졌다가 73年에는 3.53%로 크게 떨어지고 있으나 이는 주로 糜穀輸入이 늘어났던 反面에 平均關稅率(名目)이 66年的 4.71%(米麥類)에서 73年에는 1.88%로 크게 떨어졌던 關稅減免의 擴大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製造業部門의 名目關稅率도 66年的 11.2%에서 68年에는 10.7%(KDI資料), 73年에는 8.32%台로 계속 떨어지고 있으나 이는 業種別 名目關稅率의 低下가 機械工業이나 纖維 및 기타 輕工業分野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輸出用原資材 및 重要產業用 機械 및 資材에 대한

<表 17>

產業別 關稅保護率(1968年)

(單位 : 百分比)

	法定保護率	名目保護率 ¹⁾	實効保護率 ²⁾
1 次 產 業	34.1	15.9	17.1
農 業	36.0	16.6	18.1
鑄 業	9.6	6.9	2.9
製 造 業	58.8	10.7	-0.9
全 交 易 對 象	49.4	12.6	9.9

1) 世界市場價格에 대한 内外價格差의 比率

2) Balassa概念에 의함

資料 : KDI, Kwang Suk Kim, "Outward-Looking Industrialization Strategy: The Case of Korea"에서 引用.

關稅減免幅이 높어 난데 그 原因이 있다.

이 研究에서는 두 가지 方法으로 實效保護率을 計測하였다. 그 하나는 國內生產을 保護하는 關稅의 補助效果가 法定關稅率에 의하여 規定되고, 投入物에 대한 關稅의 課稅效果는 名目關稅率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보는 接近方法이고⁽³⁸⁾ 또 다른 하나는 關稅의 補助效果가 모두 名目關稅率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보는 接近方法이다. 첫째의 接近方法에 의한 計測結果

<表 18>

實效關稅保護率 (1)

(單位 : 百分比)

	1 9 6 6	1 9 7 3
農 林 水 產 業	30.66	24.73
鑄 業	11.36	10.71
製 造 業	73.19	77.88
食 飲 料 品	91.55	85.84
纖 維	109.46	109.10
기 타 輕 工 業	59.08	71.69
化 學 工 業	42.45	54.17
金 屬 工 業	33.48	55.92
機 械 工 業	50.03	69.14
工 業 平 均	47.19	53.65

는 <表 18>에 要約되어 있다. 이 表에서 살펴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1966年에 있어서는 製造業 중 纖維, 食飲料品, 그리고 기타 輕工業部門에 대한 實效保護率이 높았으나 73年에는 漸進의 變化가 생겨 나고 있다. 즉 機械 金屬 化學 등 重化學工業部門에 대한 實效保護率이 현저하게 높아졌던 反面에 1次產業을 위시하여 食飲料品 및 纖維工業에 대한 保護率은 다소 떨어지고 있다.

(38) 韓國經濟開發協會가 1967年 6月에 발표한 「韓國產業의 實效保護率 計測結果報告」에서 채택한 接近法이다.

關稅의 補助效果 및 課稅效果를 모두 名目關稅率(實際의 關稅賦課額 나누기 輸入額)에 의하여 評價하고 이를 土台로 하여 實效保護率을 計測한 結果는 〈表 19〉에 要約되어 있다. 이 表에서 살펴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1966年에는 製造業部門보다 農林水產業部門이, 製造

〈表 19〉

實效關稅保護率 (2)

(單位: 百分比)

	1966	1973
農林水產業	15.87	3.52
鑛業	10.22	10.33
製造業	10.78	9.61
食飲料品	28.60	22.73
織維	1.04	0.72
기타輕工業	9.73	6.92
化學工業	12.83	15.62
金屬工業	9.83	7.14
機械工業	7.47	5.59
產業平均	13.19	7.46

業部門에 있어서는 食飲料品, 化學工業 등에 대한 實效保護率이 높았다. 1973年에는 農林水產業部門보다 製造業部門이, 製造業部門내에 있어서는 역시 食飲料品, 化學工業에 대한 實效保護率이 높으나⁽³⁹⁾ 化學工業을 除外한 모든 製造業部門에서 實效保護率이 低下되는 현상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1967年부터 실시된 第2次 5개年計劃과 1972年부터 推進된 第3次 5개年計劃을 통하여 全產業部門에 걸쳐 輸出이 급격히 증대됨에 따라 輸出關聯產業의 國際競爭力이 강화되어 實效保護率이 점차 引下되었던 것을 나타내고 있다. 즉 產業

〈表 20〉

輸出率

(單位: 百分比)

	1966	1973
農林水產業	1.24	4.83
鑛業	20.82	13.44
食飲料品	5.91	6.17
織維	14.96	47.16
기타輕工業	13.58	36.73
化學工業	5.15	10.87
金屬工業	9.81	26.42
機械工業	5.68	19.09
產業平均	6.30	19.14

輸出額/國內生產額=輸出率

(39) 日本에서 計測된 實效保護率에 의하면 역시 製造業 중 加工食品, 纖維製品, 基礎化學品, 金屬製品 裝身具 등이 높은 關稅保護을 받고 있었다,

山澤逸平, 「關稅構造와 產業保護」, 世界經濟評論, 11卷 6號, 1967.

別 輸出率을 보면 1966年과 1973年을 비교하여 볼 때 鎌業部門을 제외하고 모든 產業部門의 輸出率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織維, 기타輕工業, 機械工業 金屬工業 그리고 農林水產業의 경우 輸出率이 3倍 가까이 또는 그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輸出伸張率이 높았던 產業일수록 實效保護率이 낮거나 또는 크게 떨어지고 있다.⁽⁴⁰⁾例컨대 織維工業의 輸出率은 64년의 14.96%에서 73년에는 47.16%로 약 3.2倍가 되었으나 實效保護率(2)은 66년의 1.04%에서 0.72%로 떨어지고 있다. 또한 機械工業은 그 輸出率이 66년의 5.68%에서 73년에는 19.09%로 약 3.4倍가 되었으나 實效保護率은 7.47%에서 5.59%로 떨어지고 있다.

한편 輸出依存度의 推移를 보면 1966年과 1973年을 비교하여 볼 때, 化學工業의 경우 66년의 71.53%에서 73년에는 32.28%로 급격히 低下되고 있으나, 化學工業의 實效保護率(2)는 66년의 12.83%에서 73년에는 15.62%로, 製造業部門 중에서 유일하게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할 것도 없이 化學工業이 輸入代替產業部門으로서 關稅保護가 강화된 分野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⁴¹⁾ 또한 農林水產業과 化學工業을 제외한 그밖의 產業部門에 있어서는 모두 總輸入依存度가 높아지고 있으나 總輸入依存度를 競爭輸入과 非

<表 21>

輸出依存度의 變化

(單位: 百分比)

	1966		1973	
	總 輸 入	非 競 爭 輸 入	總 輸 入	非 競 爭 輸 入
農 林 水 產 業	3.17	0.01	1.22	0.11
鎌 業	1.96	0.83	4.77	1.04
食 飲 料 品	0.72	0.20	20.15	4.42
織 織 紡 纖	19.80	12.08	21.85	6.61
기 타 輕 工 業	26.29	22.14	28.90	17.71
化 學 工 業	71.53	66.72	32.28	22.89
金 屬 工 業	27.57	8.41	37.57	2.14
機 械 工 業	17.25	5.31	20.02	1.08
產 業 平 均	15.15	9.92	18.86	6.64

競爭輸入으로 區分하여 보면 製造業部門에 있어서는 食飲料品을 제외한 모든 工業部門의 非競爭輸入依存度가 크게 低下되었던 反面에 競爭輸入依存度는 모두 높아지고 있다. 그리하여 總輸入依存度가 높아졌던 것은 輸出用 原資材의 輸入을 비롯하여 輸出指向的 工業化

(40) 이 같은 현상은 輸出產業으로 成長한 產業에 대하여는 關稅保護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과 一致되고 있다.

(41) KDI의 分析結果에 의하면 國內總供給의 10%이상을 輸入에 의존하는 輸入代替產業에 대한 實效保護率이 91.7% (68年, Balassa概念)로 가장 높으나 化學工業의 輸入依存度는 金屬工業보다 낮다.

를 촉진하기 위한 競爭輸入의 증가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輸入中間財에 대한 實際關稅率도 1966年과 1973年을 비교하여 볼 때 農林水產業部門을 除外하고 모두 크게 引下되었으나 輸入中間財에 대한 名目關稅率의 引下는 輸出產業의 競爭力を 강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輸入代替產業에 대한 實效保護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反面에 輸入中間財에 대한 低率關稅의 賦課는 中間財에 대한 輸入需要를 증대시키는 要因으로 作用하는 데 그치지 않고 國內生產에 대한 逆誘因으로 作用하였다고 볼 수 있다.

〈表 22〉

輸入中間財에 대한 實際關稅率

(單位 : 百分比)

	1966	1973
農林水產業	1.44	4.40
鐵 飲 料 品	21.54	6.95
食 織 工 軽 業	15.90	5.74
化 學 工 業	14.22	4.19
金 屬 工 業	10.87	3.30
機 械 工 業	16.88	7.12
產 業 平 均	8.27	4.51
	8.51	5.98
	11.49	5.22

V. 政策課題

1973年 2月의 關稅率調整에 따라 그 틀이 마련된 現行 關稅率構造는 첫째로 高率의 保護 關稅로 인하여 非經濟的 事業에 대한 投資를 촉진하고, 關稅減免이 불가피하게 되어 名目 關稅率과 實效 關稅率간의 乖離를 확대시키는 한편 密輸를 유발하는 原因이 되고, 둘째로 主要原 資材에 대한 低率 關稅의 賦課로 인하여 原資材의 輸入을 촉진하여 海外依存度를 높이고 關稅收入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問題點이 지적되고 있다. 그밖에 現行 多段階 關稅構造와 用 途分類가 行政을 복잡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課稅의 公平을 阻害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⁴²⁾

이 研究에서 123개 產業(1973年 產業聯關表 基本表部門 153개 部門에서 實物生產部門만을 對象으로 함)을 대상으로 하여 實效 關稅率을 計測한 結果에 의하면 1973年에 있어서도 飲料品, 煙草, 기타 食料品, 醫藥品, 化粧品, 고무製品 등의 實效 關稅率(2)이 높았고, 纖維系, 製革, 草製品, 有機基礎化學製品, 銑鐵, 粗鋼, 電氣機械 등에 대한 實效 關稅率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에 속하고 있다. 이 같은 計測結果는 바로 위에서 지적된 問題點과 符合되

(42) 財務部 關稅局, 「關稅制度의 現況과 運營」, 1975年.

는事實인 것이다. 그리고 現行 關稅率構造는 謹力稅率包含 4,426개 品目에 經濟的 用途나 加工度에 따라 5%내지 10%의 差異를 갖는 17段階 稅率이 適用되고 있으나 이러한 稅率의 多段階化가 반드시 合理的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이미 그 問題點이 지적되고 있는 것과 같이 行政上 복잡하고 課稅의 公平을 實害하는 面도 없지 않다.

그리하여 이 같은 現行 稅率構造를 合理化하기 위해서는 이미 1973年 2月의 關稅率調整에서 채택한 基本方向과 같이 過當保護가 되고 있는 產業에 대한 實效保護를 止揚하는 한편 重化學工業을 中心으로 하는 產業構造의 高度化를 支援하고, 稅率을 中心目標稅率(20%)에 接近시키도록 低率關稅를 引上하고, 高率關稅를 引下하는 關稅率調整이 필요하다. 이미 關係當局은 이상과 같은 基本方向과 함께 稅率構造의 單純化(7段階)에⁽⁴³⁾ 의하여 產業間의 均衡稅率을 유지하고 定額關稅還給制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保護對象品目을 最少限으로 선정하여 時限附로 關稅保護를 부여한다는 改編方向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關稅率改編方向은 바로 關稅保護에 수반되는 過當保護 내지 非效率의 可能性을 줄여 輸出指向의 成長發展에 대한 關稅의 寄與度를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43) 關稅當局은 長期의 稅率構造로서 無稅, 20%, 60%, 150%로 구성되는 4段階 稅率構造를 구상하고 있고, 短期的 稅率構造로서는 無稅, 10%, 20%, 30%, 40%, 60%, 150%에 달하는 7段階 稅率構造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1. 附表 關稅 奉定基準策定方案 (1963年)

加工度與經濟的用途別		天然產物		原 料		中間製品		完 製 品		產 業 用 機 器		其 他 機 器		備 考			
擴稅比重值		普 高		普 高		普 高		生 產 財		消 費 財		重 要		一 般		普 高	
國內生產別		H	V	1	1 H	2	2 H	3	3 H	4	4 H	1	1 H	2	2 H	3	3 H
緊 要 度	國營 業 上 特 殊 取 拔 品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緊 要 度	國營 業 上 特 殊 取 拔 品	5	5	10	10	15	15	20	20	20	25	5	10	15	20	20	20
緊 要 度	能 分 足	15	15	20	20	30	40	45	45	50	60	10	15	30	45	50	50
緊 要 度	能 分 足	20	25	25	35	35	45	50	50	60	70	15	20	35	50	60	70
緊 要 度	能 分 足	20	25	30	40	50	60	70	70	80	90	20	25	40	60	70	80
緊 要 度	不 部 充	10	10	15	20	25	30	35	35	40	50	10	15	25	35	40	40
緊 要 度	不 部 充	20	20	25	35	45	50	60	60	70	80	15	25	45	60	70	70
緊 要 度	不 部 充	25	25	35	45	60	70	70	70	80	90	20	25	30	50	70	80
緊 要 度	不 部 充	25	35	40	50	60	80	90	90	100	120	25	35	60	80	90	90
緊 要 度	不 部 充	20	25	30	40	50	60	70	70	80	90	25	30	50	70	80	80
緊 要 度	不 部 充	30	40	50	60	70	80	100	100	120	140	40	50	70	100	120	120
緊 要 度	不 部 充	35	50	60	70	80	100	120	120	140	160	50	60	80	120	140	140
緊 要 度	輸 入 抑 制 品	40	60	70	80	90	120	140	140	160	250	60	70	90	140	180	250

(註) (1) 球倣이 地圖의 를은 從量程表로 하고 雪塘이 橋旁으로 從量. 從量擇一弓側 定하.

- (2) 從價稅率은 擠稅比重值와 V.H.와의 相乘積을 百分率로 하. 本表中 1H, 2H, 3H, 4H 를의 稅率은 (가) 40% 未滿의 것은 普通加工度의 것에 5%를 加算한 數值임. (나) 100% 以上의 것은 普通加工度의 것에 100%를 加算한 數值임.

1. 本表中 1H, 2H, 3H, 4H 를의 稅率은 (가) 40% 未滿의 것은 普通加工度의 것에 5%를 加算한 數值임. (나) 100% 以上의 것은 普通加工度의 것에 100%를 加算한 數值임.

2. 繫要品中 國內生產不能品의 最低稅率은 25%로 하. 本表中 1H, 2H, 3H, 4H 를의 稅率은 (나) 100% 未滿의 것은 普通加工度의 最低稅率은 25%로 하. 本表中 1H, 2H, 3H, 4H 를의 稅率은 (나) 100% 未滿의 것은 普通加工度의 最低稅率은 25%로 하.

3. 有用品中 國內生產充足品의 最低稅率은 35%로 하. 部分生産의 最低稅率은 40%로 하며, 國內生產充足品의 最低稅率은 50%로 하였음.

4. 有用品의 稅率은 180%乃至 250%로 하였음.

5. 輸入抑制品의 最低稅率은 60%로 하. 有用品中에서 有用品의 稅率은 5% 내지 10%를 加減하여 定하였다.

6. 繫要品 및 有用品中에서 有用品의 稅率은 5% 내지 10%를 加減하여 定하였다.

7. 機械類에는 部分品을 包含함.

(3) 關稅率이 100%以上인 高率關稅品으로서 國內產業保護 또는 輸入抑制의 實益이 없고 平均關稅率만 引上시킬 壓慮가 있는 物品의 最高稅率은 100%로 하. 他製造工業의 原料로 使用되는 物品의 稅率은 生產財의 同率로 함. 國際上 別途取扱이여 有稅品 외 外價格差에 依하여 關稅率을 정할 必要가 있는 物品에 附註하는 本表를 適用하거니와.

(4) 完製化學工業生産品중에서 關稅率이 100%로 하여야 할 有稅品 외 外價格差에 依하여 關稅率을 정한 物품에 關稅率은 100%로 하.

(5) 國際上 別途取扱이여 有稅品 외 外價格差에 依하여 關稅率을 정한 物품에 關稅率은 100%로 하.

出：財務部, 稅制改革白書, 1967, pp. 214-15.

卷之三

附表 2.

部 門 統 合 內 容

8 個 部 門	42 個 部 門
農林水產業	米麥類, 果菜 및 其他의 穀物, 工藝作物, 畜產 및 養蠶, 林產物, 水產物.
礦業	石炭, 金屬礦石, 非金屬礦石.
飲料品	屠殺·醣農·果實加工, 水產加工, 搗精 및 製粉, 其他食料品, 飲料品, 煙草.
纖維	纖維絲, 織物, 纖維製品.
기타輕工業	製革·革製品, 製材 및 合板, 木製品 및 木製家具, 紙類 및 紙製品, 印刷出版, 非金屬礦物製品, 기타製造業.
化 學	無機基礎化學製品, 有機基礎化學製品, 化學肥料, 醫藥品, 化粧品, 기타化學製品, 石油製品, 石炭製品, 卫生製品.
金屬工業	銑鐵·粗鋼, 鐵鋼 1次製品, 非鐵金屬地金 및 同1次製品, 金屬製品.
機械工業	一般機械, 電氣機械, 輸送用機械, 精密機械 및 光學機具.

附表 3.

現 行 關 稅 率 構 造 (1975年)

稅 率 (%)	稅	稅 目 別			構 成 比		
		基 本	彈 力	包 含	基 本	彈 力	包 含
無	稅	219	259		5.5%	5.9%	
5		103	121		2.6	2.7	
9		—	1		—	—	
10		412	463		10.3	10.5	
15		102	110		2.5	2.5	
20		1,425	1,514		35.7	34.2	
25		13	—		0.3	0.3	
30		360	529		9.0	12.0	
35		16			0.4	0.4	
40		315	345		7.9	7.8	
50		383	394		9.6	8.9	
60		246	256		6.2	5.9	
70		47			1.2	1.1	
80		215			5.4	4.9	
100		99	100		2.5	2.3	
120		—	2		—	—	
150		11			0.3	0.3	
選 擇 稅		7			0.2	0.1	
從 量 稅		23			0.6	0.5	
17 段 階		3,996	4,426		100	100	